
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대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0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8.

발 의 자 : 박대출 · 이태규 · 신원식
이양수 · 백종현 · 유상범
김승수 · 이만희 · 이달곤
최춘식 · 정진석 · 김미애
박성민 · 윤두현 · 이종배
정경희 · 양금희 · 김석기
박대수 · 강민국 · 송언석
배현진 · 송석준 의원
(2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, 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소위 “묻지마 흉악범죄”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.

그럼에도 현행법상 흉악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노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,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7조를 정비하여 죄명을 “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 등”으로 변경하고, 기존 “범죄단체 구성” 등

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에 추가로 “살인·상해·폭행·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”에 공용(供用)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·제공·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, 대중교통수단, 공연·집회 장소, 그 밖에 공중(公衆)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, 흉악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공공장소 등의 흉기 노출 및 휴대행위 등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우범자)”를 “(범죄공용우려 흥기 휴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범죄”를 “범죄 또는 살인·상해·폭행·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”로, “300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대중교통수단, 공연·집회 장소, 그 밖에 공중(公衆)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전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우범자) <u>정당한 이유 없이</u> 이 법에 규정된 <u>범죄에 공용</u> (供用)될 우려가 있는 <u>흉기나</u>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<u>휴대하</u> 거나 <u>제공 또는 알선한</u>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300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7조(<u>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</u> 등) ① ----- <u>범죄 또는 살인</u> <u>·상해·폭행·협박 등 사람의</u> <u>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</u> <u>전을 위협하는 범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3천만원</u> ----- ② <u>대중교통수단, 공연·집회</u> <u>장소, 그 밖에 공중(公衆)이 밀</u> <u>집하는 장소에서 전항의 죄를</u> <u>범한</u>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5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<u>처한다.</u>
<신 설>	